

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기 관 명	호세방문요양센터
소 재 지	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376
대 표 자 명	한 상 원
시행 및 개정일	2025년 1월 1일

제 1조.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목적

- 1)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중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와드리고자 한다.
- 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,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.

2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2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3. 이용인원

- 1)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,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.
- 2)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/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3)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~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,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.
- 4)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
제 2조.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

1.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- 2)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매월 10일 안에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.
- 3)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.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.
- 4)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.
- 5) 그 밖의 이용부담액
 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5. 1. 1.)

▶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방문당)

시간	금액
30분 이상	16,940
60분 이상	24,580
90분 이상	33,120
120분 이상	42,160
150분 이상	49,160
180분 이상	55,350
210분 이상	61,670
240분 이상	68,030

▶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▶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(2025. 1.기준)

구 분	본인부담금 비율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보험료감경대상자	9%
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 25%이하인자)	6%

제 3조. 서비스 내용

1. 서비스내용

- 1)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: 세면 도움, 식사 도움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 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이동 도움, 체위 변경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
- 2)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: 의사소통 도움,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,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, 비상 연락망 준비 등
- 3) 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: 인지 자극 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는 등
- 4)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: 외출 시 동행, 장보기, 산책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,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, 음식물 조리, 설거지,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, 세탁 등

제 4조. 계약자·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

1. 서비스 제공자/서비스 이용 대상자(보호자)의 의무

- 1)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(혹은 법적 대리인)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.
- 2)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,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,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.
- 3)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- 4)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.
- 5)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,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,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2. 서비스 이용 대상자(보호자)의 의무

- 1) 수급자 건강, 병적 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.
- 2) 이용자의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, 비급여 등)를 납부해야 한다.
- 3) 인적 사항, 건강 상태,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.
- 4)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를 준수해야 한다.

제 5조. 계약의 해제

-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- 1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4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5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6)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